

★

문서번호	교육청소년과-9299
결재일자	2015.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이동청소년문화담당	교육청소년과장	교육문화복지국장
전보현	황지연	최병재	04/17 도일환
협 조			

2015 성북구 사전아동영향평가 실시 결과보고



2015. 4.

교육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2015 성북구 사전아동영향평가 실시 결과보고

성북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 보장 등 아동친화적인 정책 추진을 유도하고자 실시한 사전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드림.

1 사전 아동영향평가 실시 개요

■ 추진개요

○ 실시 목적

- 아동친화도시로 정착을 위해 ‘성북구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 마련을 위함
- 이를 위해 ‘2015. 세출예산 단위(세부)사업’ 중 아동권리와 관련 있는 42개 세부사업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북구 아동영향평가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실시 기간

- 아동영향평가 실시 : ~ 2015. 3. 31(화)
- 평가결과 주관부서 검토 : ~ 2015. 4. 10(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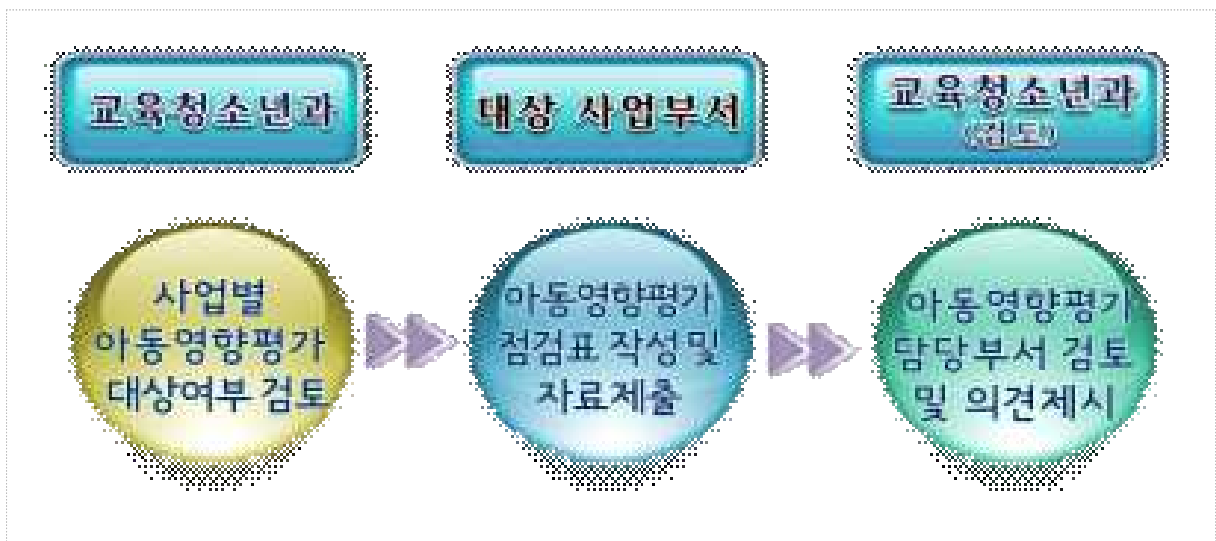
○ 실시 대상 : 2015. 세출예산 세부사업 중 42개 사업선정

- 2015. 세출예산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42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 추진방법

-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7개 영역 13개 질문 구성)에 의거 평가 실시
- 평가실시 : 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별 담당 부서
 - 계속사업의 경우 2014년 진행내역과 2015년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 증진 또는 침해사항에 대하여 점검표에 의거 자가 점검 실시
 -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서, 설명자료 등 증빙자료 제출
 - 아동영향평가점검표 및 기초서식, 대상 사업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평가결과 검토 : 아동영향평가 주관 부서(교육청소년과)
 - 아동영향평가 점검표와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부서의 적정 점검여부 검토
 - 아동영향평가점검표(사업부서용)에 대한 의견제시, 아동영향평가 주관 부서용 점검표 총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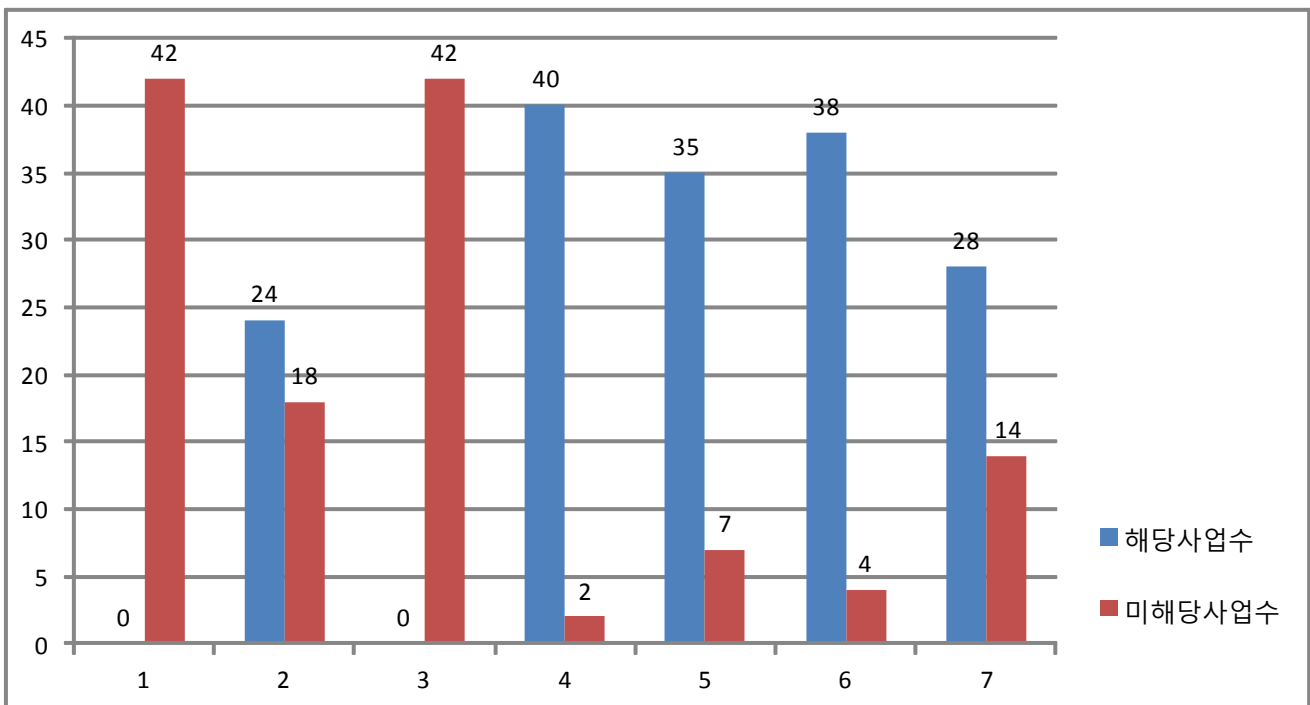
※ 진행순서



총 평

- 2015년 아동영향평가 실시는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되는 원년으로 사전 영향 평가의 체계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14년 시범 실시로 많은 부서에 아동영향 평가는 총괄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성북구의 전체의 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대부분의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함.
- 사전 아동영향평가 결과 아동의 “참여권” 과 “의견 수렴” 부분이 취약하여 정책 실행 시 반영이 필요하며 사후 평가가 ‘필요없음’ 으로 응답한 부서 중 일부 사업은 아동권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사업시행 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동영향평가 점검표의 7개 영역별 해당·미해당 사업 수



■ 평가영역별 응답 및 검토의견

- ①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 :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UN아동권리협약, 여타 아동·청소년 법규와 갈등 우려, 타 법규와 갈등 우려 유무
 - ☞ 갈등 우려 없음: 전체 42개 사업
- ② 아동의 제반 권리와와의 관계 :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 ☞ 고려함 : 생존권 - 32개 , 보호권 - 35개 ,
발달권 - 40개 , 참여권 - 24개 사업
 - ☞ 고려하지 않음: 18개 사업
 - ※ 위의 18개의 사업은 아동의 의견 청취·수렴 방안을 계획 수립 전 고려할 것이 요구되며,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아동의 보호권을 고려해 계획 전 아동의 안전에 유념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 ③ 무차별의 원칙 : 해당 사업이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지?
 - ☞ 아니오 : 전체 42개 사업
- ④ 아동 최선의 이익 : 해당 사업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지?
 - ☞ 예 : 40개 사업
 - ☞ 아니오 : 2개 사업
 - ※ “책 읽는 성북, 하나 되는 성북”, “방범CCTV 설치”는 수혜대상이 아동으로 국한된 사업이 아님을 감안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여짐.
- ⑤ 당사자의 의견 수렴
 - ☞ 예 : 아동 의견 수렴 - 8개 사업
이해당사자(학부모, 교사, 주민 등) 의견 수렴 - 32개 사업
 - ☞ 아니오 : 7개 사업
 - ※ 환경과(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교육), 공원녹지과(어린이공원 유지 관리)의 경우 검토의견으로 아동 의견 수렴을 권고
- ⑥ 홍보 : 해당 사업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 ☞ 예 : 38개 사업
 - ☞ 아니오 : 4개 사업

※교육청소년과(지역아동센터지원), 문화체육과(책 읽는 성북, 하나 되는 성북 공원녹지과(이린이 공원 정비사업, 어린이 공원 유지관리)

7 사후평가 필요성 : 해당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후 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지?

☞ 예 : 28개 사업

아니오 : 14개 사업

※ 아동의 권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행 후 점검 필요

■ 사전평가 결과 추후 요구되는 사후평가 방식

○ 사업 별 사후평가 방식(안)

구분	방식	해당사업 수
사 후 평 가	소관부서 자체평가	33개 사업 (인권증진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멘토링 지원사업, 결식아동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재정비사업 등)
	아동영향평가부서의 검토	5개 사업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어린이가 함께 디자인하는 마을만들기,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성북생태체험관 및 프로그램 운영)
	심층 어린이·청소년의회 등 아동참여기구 및 아동 권리모니터링단의 검토	4개 사업 (다문화 지원사업 공모, 청소년 어울마당,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

○ 사업 별 사후평가 방식 결정 및 진행

- 사후 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동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2015. 5.)
- 사후 아동영향평가 대상으로 확정된 대상사업은 평가단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평가 진행 예정

■ 기타 검토의견

○ 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 대상 세부사업이 다수의 사업들로 구성된 경우 아동영향평가의 실효성 낮으므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이 적합하다 판단됨.

(예시 : 인권증진사업의 경우 인권위원회, 인권백서, 인권증진기본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세부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기 포괄적임)

- 아동과 관련성이 '간접'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평가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 평가를 실시한 부서 담당자의 의견 수렴하여 사업부서용, 총괄부서용 점검표 수정 필요

(예시 : 점검표 1번 문항의 타법률과 갈등우려 유무에서 고시, 훈령, 규정 등의 예시보다 법률, 조례, 시행규칙, 방침(계획) 등의 표현이 적절하다 생각됨)

3

향후 계획

■ 아동권리 지킴이단 모집 : 2015. 4 ~ 5.

■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 2015. 5.

■ 아동영향평가위원회 개최 : 2015. 5.

■ 아동권리 지킴이단 운영 실시 : 2015. 5 ~

■ 사후 아동영향평가 실시 : 2015. 12.

- 붙임 : 1.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1부.
2. 아동영향평가 부서별 검토의견 1부.
3. 아동영향평가 총괄부서 검토의견 1부. 끝.